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7105호, '20.3.24 개정, '20.9.25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부령에 위임한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어려운 한자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축약되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
(안 제9조)

○ 출자 좌수(座數) → 출좌계좌 수

나. 외부회계감사 수감대상 설정(안 제10조의2 신설)

○ 외부회계감사 수감 주기 완화(매년→2년)에도 불구하고, 종전(매년)과 같이 수감대상 조합*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횡령·배임사고, 수재·알선수재 사고, 사금용알선 사고 및 예산 부당 전용 사고가 발생한 조합 등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3호 중 “출자 좌수(座數)”를 “출자계좌 수”로 한다.

제10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하고, 제10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외부회계감사) 법 제169조제7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조합”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 소속 임직원이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횡령 또는 배임한 조합
2. 소속 임직원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제7조를 위반하여 수재 또는 알선수재한 조합
3. 소속 임직원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여 사금융을 알선한 조합
4. 소속 임직원이 기타 각종 자금 편취, 유용, 예산 부당전용 또는 대출 한도 초과 등의 회계부정을 일으킨 조합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4(조합공동사업법인 회원의 가입 신청) 법 제113조의4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4(조합공동사업법인 회원의 가입 신청) -----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인수하려는 <u>출자 좌수(座數)</u> 를 적은 서면		3. ----- <u>출자계좌 수</u> ----- -----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10조의2(외부회계감사) 법 제169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조합”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 소속 임직원이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u>횡령 또는 배임한 조합</u>		
		2. 소속 임직원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제7조를 위반하여 <u>수재 또는 알선수재한 조합</u>		

<u>제10조의2</u>(업무정지의 세부기준) (생략)	3. 소속 임직원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 8조를 위반하여 사금융을 알선한 조합 4. 소속 임직원이 기타 각종 자금 편취, 유용, 예산 부당전용 또는 대출 한도 초과 등의 회계부정을 일으킨 조합 <u>제10조의3</u>(업무정지의 세부기준)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430